

「시설 사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 2016. 11. 1. 개정 판 (시행 2016. 11. 1.)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55/compare?from=383&to=384>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2:12:35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u>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장소사용(운동장/테니스장)은 주간에 실시하며, 야간 활동 시 라이트 사용은 불허한다.</u>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u>학회 임원으로</u>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는 사용료의 50%를 납부한다.<개정 2016-11-01>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삭제> <개정 2016-11-01>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현행	개정안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350석	450,000
450,000	250,000
250,000	100,000
100,000	냉방
냉방	100,000
100,000	리허설 1회
리허설 1회	- 100,000
- 100,000	난방
난방	150,000
150,000	제2과학관(세)
제2과학관(세)	150석
150석	150,000
150,000	50,000
50,000	냉방
냉방	100,000
100,000	난방
난방	150,000
150,000	요한관 강당
요한관 강당	450석
450석	550,000
550,000	350,000
350,000	100,000
100,000	냉방
냉방	150,000
150,000	난방
난방	200,000
200,000	야외행사
야외행사	100,000
100,000	야외예배(안)
야외예배(안)	무료
무료	침례탕/분수대
침례탕/분수대	80,000
80,000	용할 경우 - 4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손님방	50,000
50,000	(\$ 50)
(\$ 50)	2인 1실 사용시
2인 1실 사용시	- 70,000(\$ 70)
- 70,000(\$ 70)	인 성
인 성	교육관
교육관	침실
침실	30,000
30,000	총 17실
총 17실	강의실(1일)
강의실(1일)	50,000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현 행	개 정 안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㉔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㉔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현행	개정안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개정 2016-11-01〉</u>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 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버스 대여<신설 2016-11-01>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신설 2016-11-01>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6-11-01>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시설 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는 사용료의 50%를 납부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450,000

250,000

100,000

냉방

100,000

리허설 1회

- 100,000

난방

150,000

제2과학관(세)

150석

150,000

50,000

냉방

100,000

난방

150,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000
 350,000
 100,000
 냉방
 15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침례탕/분수대
 8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50,000
 (\$ 50)
 2인 1실 사용시
 - 70,000(\$ 70)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 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 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버스 대여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